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25
----------	---------

제안년월일 : 2022년 2월 14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수정이유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확대하고,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유적 소유자에게 상위 법령 근거없이 과도한 관리책임 규정을 부여하고 있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유적자문단에게 의무권한 기능은 기존 문화재위원회의 역할과 충돌될 소지가 있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안 제4조제3항은 개정안과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함.
- 안 제5조제5호는 「항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함.

- 안 제5조의2제3항 각 호에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항일유적 지도제작 등을 신설함.

- 안 제5조의3제2항은 유적에 관하여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유적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유적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의4제2항은 자문단이 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충돌가능성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립·분석
5.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6.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7.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5조의4제2항 중 “마련하여야 한다.” 를 “마련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계획의 수립 등)</p> <p>① ~ ② (생 략)</p> <p>③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u></p> <p>1. <u>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u></p> <p>2. <u>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u></p> <p>3. <u>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u></p> <p>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제4조(계획의 수립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계획의 수립 등)</p> <p>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삭 제></u></p>
<p>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5조(사업의 추진)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u></p>	<p>제5조(사업의 추진) (현행과 같음)</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5.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p> <p>1. <u>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분석</u></p> <p>2. <u>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판정</u></p> <p>3. <u>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u></p> <p>4. <u>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u></p>	<p>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p> <p>1. <u>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u></p> <p>2. <u>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u></p> <p>3. <u>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u></p> <p>4. <u>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분석</u></p> <p>5. <u>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u></p> <p>6. <u>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u></p> <p>7. <u>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u></p> <p>8.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④ ~ ⑤ (생 략)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제5조의3(관리의 원칙) ① (생 략) ② <u>시장은 소유자·관 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치구에 관리·보호 를 요청할 수 있다.</u>	제5조의3(관리의 원칙)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시장은 관리가 곤란 하거나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면 소유 자·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 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u>
	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 ① (생 략) ② <u>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 가 있다고 인정할 경 우 항일독립운동 유적 에 대하여 별도의 보 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	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 가 있다고 인정할 경 우 항일독립운동유적 에 대하여 별도의 보 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향토 사학자, 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립·분석
5.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6.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7.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자문단(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의3(관리의 원칙) ①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표창)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p> <p><u>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삭제></u></p>
<p>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생략)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5조(사업의 추진)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u>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u> 5. (현행 제4호와 같음) <p>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u>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u></p>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향토 사학자, 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립·분석

5.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6.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7.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자문단(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관리의 원칙) ①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표창)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